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821
----------	-------

발의연월일 : 2026. 5. 6.

발 의 자 : 안태준 · 강준현 · 문진석
이정문 · 송옥주 · 이연희
소병훈 · 김정호 · 부승찬
김종민 · 박 정 의원
(11인)

제안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는 다수의 국립박물관들이 집적된 복합문화 공간으로, 국가균형발전 및 국민 문화수요 충족, 도시 자족 기능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2023년 12월 어린이체험관(어린이박물관)이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27년 국립도시건축박물관, 2029년 국립디자인박물관 및 국가유산디지털박물관이 순차적으로 개관될 예정임.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2023년 4월 설립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는 어린이체험관(어린이박물관), 수장고, 지원시설에 한정된 관리로 그 업무가 제한적이고, 박물관단지 내 각 박물관들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하기 위한 운영 체계는 미흡한 상황임.

이에 본 법률안은 기존 통합운영지원센터를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재단’으로 전환하며 통합운영 대상 개별박물관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인의 조직과 사업 범위를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협력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이 법 개정을 통해 각 박물관의 고유한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박물관단지 차원의 통합 운영을 실현함으로써 국민에게 더욱 풍부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주요내용

- 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를 운영하기 위한 조직인 통합운영지원센터를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함(제1조).
- 나. 국립도시건축박물관·국립디자인박물관·국가유산디지털박물관을 정의하고 어린이체험관을 국립세종어린이박물관으로 하며, 각 박물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주무관청으로 함(제2조).
- 다. 재단 정관에 ‘개별박물관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관 변경시 건설청장이 주무관청과 협의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제5조).
- 라. 재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위탁하는 사업을 건설청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할 수 있고, 개별박물관의 수익사업은 건설청장이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마. 재단의 업무 확대에 따라 이사장 1명, 상임이사 5명 이내, 비상임이사 8명 이내, 감사 1명의 임원을 둠(제7조).

바. 주무관청은 소관 박물관에 대하여 지도·감독과 명령, 보고 및 검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20조).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운영지원센터를”을 “운영 및 지원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재단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다수의 국립박물관 및 연계시설”을 “다음 각 목의 박물관(이하 “개별박물관”이라 한다) 및 통합수장고, 지원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4호) 중 ““수장고”란”을 ““통합수장고”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가. 국립도시건축박물관 : 도시·건축 분야 문화의 진흥에 이바지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하여 도시·건축 관련 유산의 발굴·보존·연구 및 전시·교육·체험하는 박물관

나. 국립디자인박물관 : 디자인 문화의 진흥과 국민의 디자인 문화 향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디자인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박물관

다. 국가유산디지털박물관 : 디지털 국가유산 향유를 통한 가치

향상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디지털 국가유산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 및 전시·교육·체험하는 박물관

라. 국립세종어린이박물관 : 어린이의 창의적 사고 증진 및 미래 융합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어린이 관련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박물관

2. “주무관청”이란 개별박물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개별박물관의 주무관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국립도시건축박물관 : 국토교통부장관

나. 국립디자인박물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다. 국가유산디지털박물관 : 국가유산청장

라. 국립세종어린이박물관 : 건설청장

제3조 중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을 “국립박물관단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원센터는”을 “재단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센터”를 “재단”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개별박물관의 사업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 중 “지원센터가”를 “재단이”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설청장은 미리 각 주무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센터는”을 “재단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 및 연계시설”을 “국립박물관단지”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연계시설”을 각각 “국립박물관단지”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 및 연계시설이”를 “국립박물관단지가”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개별박물관이 수행하는 사업은 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의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제3항(중전의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청장이 개별박물관의 수익사업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박물관의 주무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원센터”를 “재단”으로, “1명 및”을 “5명 이내 및”으로, “7명”을 “8명”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지원센터를”을 “재단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원센터”를 “재단”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센터”를 “재단”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원센터”를 “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센터의 상임임원”을 “재단의 상임임원”으로, “지원센터의 직원”을 “재단의 직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원센터의”를 “재단의”로, “지원센터에”를 “재단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센터”를 각각 “재단”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있다”를 “있으며,”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개별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박물관의 주무관청이 출연 또는 보조한다.

제13조제3항 중 “지원센터”를 “재단”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원센터”를 “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이를”을 “이 경우 건설청장은 미리 각 주무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청장”을 “건설청장과 각 주무관청”으로 한다.

제15조 중 “지원센터는”을 “재단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원센터는”을 “재단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지원센터”를 각각 “재단”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원센터의 설립당시 건설청장”을 “각 주무관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센터가”를 “재단이”로 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센터”를 각각 “재단”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지원센터를”을 “재단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지원센터”를 각각 “재단”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각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소관 박물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명령, 보고 및 검사 등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내역을 이사장과 건설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중 “지원센터”를 “재단”으로 한다.

제22조 중 “국립박물관단지 지원센터가”를 “개별박물관 및 재단이”로, “국립박물관단지 지원센터 또는”을 “제2조제1호 각 목의 박물관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재단 또는”으로 한다.

제23조 중 “지원센터”를 “재단”으로 한다.

제24조 중 “지원센터”를 “재단”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위반하여 국립박물관단지 지원센터 또는”을 “위반하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통합운영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재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통합운영지원센터’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재단’이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3조(통합운영지원센터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임직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재단’의 임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직원의 근로조건 및 계속근로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통합운영지원센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그에 갈음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재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물품의 무상양도) 국가는 이 법 시행 당시 각 주무관청이 관리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물품(박물관자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물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재단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주무관청은 해당 물품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이사장의 의견을 듣고,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무의 승계) 재단은 이 법 시행 당시 각 주무관청에 속한 권리·의무를 개별박물관 개관 시부터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7조(직원임용의 특례) ① 각 주무관청은 소관 박물관의 개관 전까

지, 관련 사무에 종사하던 소속 공무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인
인 재단의 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
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의 정원 및 인력운영계획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단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으로 구분된 사람은 재
단의 직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제8조(국립박물관단지 업무 이관) 이 법에 따른 건설청장의 업무는 국
립디자인박물관 개관 시부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이관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에 건립되는 박물관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u>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운영지원센터</u> 를 설립하여, 국립박물관단지를 풍요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운영 및 지원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재단을</u> ----- -----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립박물관단지”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및 제39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개발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적되어 건립되는 <u>다수의 국립박물관 및 연계시설</u> 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 ----- ----- ----- ----- ----- ----- <u>다음 각 목의 박물관(이하 “개별박물관”이라 한다) 및 통합수장</u>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고, 지원시설---

가. 국립도시건축박물관 : 도
시·건축 분야 문화의 진
흥에 이바지하고 미래 비
전을 공유하기 위하여 도
시·건축 관련 유산의 발
굴·보존·연구 및 전시·
교육·체험하는 박물관

나. 국립디자인박물관 : 디자
인 문화의 진흥과 국민의
디자인 문화 향유에 이바
지하기 위하여 디자인자료
를 수집·관리·보존·조
사·연구·전시·교육하
는 박물관

다. 국가유산디지털박물관 :
디지털 국가유산 향유를
통한 가치 향상 및 관련 산
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
하여 디지털 국가유산 자
료를 수집·관리·보존·
조사·연구 및 전시·교육
·체험하는 박물관

라. 국립세종어린이박물관 :
어린이의 창의적 사고 증
진 및 미래 융합인재 양성

2. <u>“통합운영지원센터”란 국립 박물관단지 내 박물관 및 연계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u> 3. <u>“연계시설”이란 수장고, 어린이체험관 및 주차장을 말한다.</u> 4. <u>“수장고”란 국립박물관단지의 각종 자료의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조사·연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u> 5. <u>“어린이체험관”이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에</u>	<u>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어린이 관련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박물관</u> 2. <u>“주무관청”이란 개별박물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개별박물관의 주무관청은 다음 각 목과 같다.</u> <u>가. 국립도시건축박물관 : 국토교통부장관</u> <u>나. 국립디자인박물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u> <u>다. 국가유산디지털박물관 : 국가유산청장</u> <u>라. 국립세종어린이박물관 : 건설청장</u> <u><삭 제></u> 3. <u>“통합수장고”란 -----</u> <u>--.</u> <u><삭 제></u>
--	---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4. (생략)

5.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
및 연계시설 사업의 홍보 및
지원

6. · 7. (생략)

8. 연계시설 전시기획 및 운영

9. 연계시설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0. 연계시설 전시 및 교육프로
그램 운영을 위한 관련 자료
의 수집 · 보존 · 관리 · 조사 ·
연구

11. 다른 법령에 따라 국립박물관
단지 내 박물관 및 연계시
설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12. · 13. (생략)

14. 그 밖에 국립박물관단지 설
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건설청장에게 인
정받거나 위탁받은 사업

<신설>

② 제1항제12호에 따른 수익사

-----.

1. ~ 4. (현행과 같음)

5. 국립박물관단지 -----

--

6. · 7. (현행과 같음)

8. 국립박물관단지 -----

9. 국립박물관단지 -----

10. 국립박물관단지 -----

--

11. ----- 국립박물관
단지가 -----

12. · 13. (현행과 같음)

14.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개별박물관이 수행하는 사업
은 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의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

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마다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제7조(임직원) ① 지원센터에는 상임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및 비상임 임원으로서 7명 이내의 비상임이사과 감사 1명을 둔다.

② (생략)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생략)

④ 감사는 지원센터의 회계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다만, 건설청장이 개별박물관의 수익사업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박물관의 주무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직원) ① 재단-----

----- 5명 이내 및 -----
--- 8명 -----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임원의 직무) ① -----
재단을 -----

-----.

② -----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

-----.

③ (현행과 같음)

④ ----- 재단-----

--.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지원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2. (생략)

② ③ (생략)

제1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지
원센터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
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지원센터의 상임임원이 건설
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지
원센터의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
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
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12조(이사회) ① 지원센터의 중
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
여 지원센터에 이사회를 둔다.

② (생략)

③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고,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
이사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그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

----- 재단-----

-----.

1. 2.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재
단-----

-----.

② 재단의 상임임원-----

----- 재

단의 직원-----

-----.

제12조(이사회) ① 재단의 -----

-- 재단에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다른 이사가 -----

직무를 대행한다.

④ ~ ⑥ (생략)

제13조(재원) ① 지원센터의 경비
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
한다.

1. ~ 3. (생략)

4.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수익
금

5. (생략)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
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
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지
원센터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4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① 지원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재원) ① 재단-----

---.

1. ~ 3. (현행과 같음)

4. 재단 -----

5. (현행과 같음)

② ----- 재단

있으며, 이 경우 개별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박물관의 주무관청이 출연
또는 보조한다.

③ ----- 재단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① 재단-----

-----.

② -----

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제출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 의결을 받은 수입·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차입금) 지원센터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16조(후원회) ① 지원센터는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
금을 받거나 지원센터에 필요한

. 이 경
우 건설청장은 미리 각 주무관
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계
획서와 예산서를 ---.

[illegible]

제15조(차입금) 재단은 -----

-----.

제16조(후원회) ① 재단은 -----

-----.

② -----
----- 재 단 -----

물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③ 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후원금이나 모집한 물품을 건설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센터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7조(박물관자료의 위탁·관리)

① 국가는 지원센터의 설립당시 건설청장이 관리하던 국가소유 박물관자료의 전문적인 보존·연구를 위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가 소유하거나 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박물관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박물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

③ -----

----- 재단 -----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박물관자료의 위탁·관리)

① --- 각 주무관청-----

-----.

② 재단이 -----

-----.

제19조(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직원을 지원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파견 기간 중 파견 근무를 해제하려면 이사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0조(감독) ① 건설청장은 지원센터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건설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건설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실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 재단-----

----. -----

-----.

③ ----- 재단-----

-----.

제20조(감독) ① ----- 재단

을 -----

----.

② -----

----- 재

단-----

-----.

③ -----

----- 재단-----

-----.

④ 각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3

	<u>항에 따른 소관 박물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명령, 보고 및 검사 등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내역을 이사장과 건설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제21조(비밀엄수 의무) <u>지원센터</u> 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 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비밀엄수 의무) <u>재단</u> ----- ----- ----- -----.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u>국립박물관단지 지원센터가</u> 아닌 자는 <u>국립박물관단지 지원센터</u>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 <u>개별박물관 및 재단이</u> ----- <u>제2조제1호 각</u> <u>목의 박물관과 행정중심복합도</u> <u>시 국립박물관단지재단 또는</u> - -----.
제23조(「민법」의 준용) <u>지원센터</u> 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민법」의 준용) <u>재단</u> -- ----- ----- ----- --.
제24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u>지원센터</u> 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	제24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u>재단</u> ----- ----- -----

원으로 본다.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22조를 위반하여 국립박물관단지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생략)	-----. 제26조(과태료)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 위반하여 ----- ----- ----- ② (현행과 같음)
--	--